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19
----------	------

발의연월일 : 2025. 2. 3.

발의의원 : 최재규 의원,

박주용 의원, 신달호 의원

## 1. 제안이유

「청소년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위원의 자격 등을 정비하였으며, 청소년 관련 기본 조례로 역할하도록 함으로써 달성군 청소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총칙(정의·책무·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장)

나. 청소년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2장)

다. 청소년육성위원회·참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장~제4장)

라.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장)

## 3. 개정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기본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다. 군 소재 법인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는 사람

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청소년 정책 수립 및 시행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

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
2. 청소년복지 향상
3. 청소년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4. 청소년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보장
5. 그 밖에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3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제9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군의 주요 시책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그 밖에 육성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청소년육성에 관한 군의 주요 시책에 대해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육성위원회의 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당연직 위원 :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대구달성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청소년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

가. 교육자

나. 청소년 전문가

다.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육성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0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임명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육성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육성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육성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을 육성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

소년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군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육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거나 육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제14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지도위원

제16조(청소년지도위원 위촉) ①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21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청소년전문가
2. 청소년지도사

3.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군에서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군에 소재하는 청소년단체·사회복지단체·학교의 장 또는 대구달성경찰서장이나 관할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의 인구, 학교 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7조(임기 등)**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도위원은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8조(활동)**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지도위원은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도위원 또는 지도위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연수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지도위원의 상호 협력 및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 읍·면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 제284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하 이 조에서 “중전 조례”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와 그 부위원장 및 위촉위원은 이 조례 제3장에 따라 구성되고 호선되며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중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구성·운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 제4장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 제284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하 이 조에서 “종전 조례”라 한다) 제3장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 제5장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이 조례 제5장에 따르되,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그 임원의 선출·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 제284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하 이 조에서 “종전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군, 읍·면 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 및 그 임원은 이 조례 제20조에 따라 구성 및 선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를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제18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로 한다.

## □ 「청소년 기본법(법률)」(2024.3.26. 일부개정·시행)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

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청소년지도위원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정보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하는 자에게 그 제작·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약물·업소·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소년시설 운영비(인건비, 프로그램비 등)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7조~제8조)
-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등에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3장~제4장)
-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을 위한 지도위원 활동 경비와 원활한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에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5장)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안 제7조)
-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미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달성군 내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연평균 2억원 정도 운영비가 계속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음(청소년지도사 인건비 및 개별사업 제외)(안 제8조)
- 현재 달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되어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운영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안 제3장)
- 현재 달성군에는 177명의 청소년지도위원이 위촉·활동하며, 이들의 활동 경비·청소년지도협의회 사업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안 제5장)
-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현재 달성군 청소년센터 내 설치하여 연평균 7백만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음(안 제4장)

작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최 재 규 (☎ 2053)
-----------	---------------	-------------	----------------